

대구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1428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1. A

2. 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1. 3. 23.

주 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9. 접수 제1739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8. 접수 제1831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성금석

별지